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- 175호
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8일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지

- 가. 명 칭 :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
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
다. 면 적 : 44,082.76㎡

2. 권리기준산정일 : 2021. 4. 8.

3. 지정사유

-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
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6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8) 또는 양천구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1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.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□ 관계도면

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76호

도시관리계획(경북공서측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통의동 70번지 일대
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01호(2016.7.14.)로 결정(변경)된 「경북광역시 지구단위계획(변경) 및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0.6.22.) 결과를 반영하여 종로구공고 제2020-1393호(2020.12.03.)로 재열람공고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8일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경북공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조성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정된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.